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6월 17일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6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 8.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9. 22.)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1. 18.)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1. 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1. 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영교의원)

현행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는 18세 미만까지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많음.

8세 이후 오히려 교육비 지출 등으로 양육 비용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과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의 조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금액의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임.

또한 양육 서비스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이 없어 이를 추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현재의 제도로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범위가 미취학아동인 만 8세 미만으로 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의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온전히 기대하기 어렵고, 그 지급 금액도 제도적으로 물가연동 등을 통해 주기적인 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고정되어 있어 매년 실질 가치

가 하락되고 있기도 함. 더구나 아동 양육비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등 추가적인 양육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월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연령 확대에 따른 전체 아동의 복리 증진 및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외에 저출산 대책으로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추가수당 지급 등과 관련한 사항임.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8세 미만은 10만원, 8~18세 미만에는 5만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지역별 차등 지원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양육 서비스 접근성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보임.

그 외,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것임.

현행법은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도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아동수당의 지급 목적이나 취지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확대 검토 필요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하고,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국고 보조율 확대 필요 등

7.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